창 원 지 방 법 원

제 21 민 사 부

결 정

사 건	2013비합63 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신청
신 청 인	주식회사 에스티엑스
	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-3
	대표이사 추성엽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, 담당변호사 김기영, 김선경, 이정환
	법무법인 해인, 담당변호사 윤근수
사건 본인	주식회사 에스티엑스
	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-3
	대표이사 추성엽

주 문

별지 1 기재 사채에 관하여 2013. 12. 20.자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2 기재 결의를 인가한다.

신 청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위 정본입니다.
창원지방법원
2014. 1. 14.
법원주사보 배 [illegible]

이 유

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4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4. 1. 14.

재 판 장 판 사 고 규 정

판 사 이 재 환

판 사 황 여 진

<별지 #1>

항 목		내 용
사채의 명칭		(주)STX 제 88 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
사 채 종 목		무보증사채
구 분		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
발행일		2010. 12. 3.
권 면 총 액		200,000,000,000
할 인 율(%)		0.00
발행수익율(%)		5.90
모집 또는 매출가액		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%
모집 또는 매출총액		200,000,000,000
각 사채의 금액		본 사채는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발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의 권종 및 번호에 관한 사항은 구별기재하지 않음.
이자율	연리이자율(%)	5.90
	변동금리부 사채 이자율	-
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	이자지급 방법	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 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/4 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,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,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지급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해당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. 단,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.
	이자지급 기한	2011 년 03 월 03 일, 2011 년 06 월 03 일, 2011 년 09 월 03 일, 2011 년 12 월 03 일, 2012 년 03 월 03 일, 2012 년 06 월 03 일, 2012 년 09 월 03 일, 2012 년 12 월 03 일, 2013 년 03 월 03 일, 2013 년 06 월 03 일, 2013 년 09 월 03 일, 2013 년 12 월 03 일,
신용평가	평가회사명	한국기업평가(주) / 한국신용평가(주)

항 목		내 용
등급	평가일자	2010 년 11 월 25 일 / 2010 년 11 월 25 일
	평가결과등급	A- / A-
주관회사의 분석	주관회사명	대표주관 : 동양종합금융증권(주)
	분석일자	2010 년 11 월 25 일
상환방법 및 기한	상 환 방 법	본 사채의 원금은 2013 년 12 월 03 일에 일시 상환한다. 다만,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,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 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해당 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. 단,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.
	상 환 기 한	2013 년 12 월 03 일
납 입 기 일		2013 년 12 월 03 일
등 록 기 관		한국예탁결제원
원리금 지급대행기관	회 사 명	(주)우리은행 STX 남산타워업무팀
	회사고유번호	00149293
기 타 사 항		▶ 본 사채는 공시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,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▶ 공시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,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▶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309 조 제 5 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,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

<별지 #2>

출자전환의 건

- 사채권자들은 사채총액의 58%(이하 "출자전환 대상채권")를 출자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(이하 "신주")을 인수하기로 한다.

  단,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비율(무담보채권총액의 출자전환 비율)이 상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채권자들의 출자 비율도 그와 동일하게 조정한다.

- 발행회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감자 이후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며, 신주의 발행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, 발행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액면금액(2,500원)으로 하기로 한다.

- 발행회사가 상기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, 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이자(연체이자 포함)가 발생하지 아니한다.

1 / 1